



인증대상 제외품목

-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
-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
-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
-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
- 식품, 의약품 및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
-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
-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
- 그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

■ 지원내용

- 공공기관 20% 의무구매(산업기술혁신촉진법, 산업통상자원부)
 - (의무구매 공공기관)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행정기관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
-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

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	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	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
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	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	성능인증(EPC)제도

- 전문연구요원제도
 - 석·박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(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병무청)
-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우대
 -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(혁신창업사업화자금/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)
 - 기술보증 지원
-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(차세대 세계일류상품)
 - 최근 3년이내에 NET·NEP 인증기업 대상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신청 가능
- 산업기술진흥 유공(신기술상용화) 정부포상
 - NET·NEP 개발기업 중 신기술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산업훈장, 산업포장, 대통령 표창, 국무총리표창 등 포상 수여(산업통상자원부, 행정안전부)
- 정부 및 지자체 R&D, 수출지원, 홍보지원 사업 신청시 우대

인증지원

인증

신제품(NEP) 인증제도
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,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

신청시기 : 2,3,4 분기 지원대상 : 대·중견·중소기업

전담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■ 지원대상

- 신제품 인증대상(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」 제19조)
 -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신기술일 것
 -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
 -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·운영하고 있을 것
 -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
 -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
- 신청자격
 - 실용화가 완료되어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, 중견 및 대기업의 대표

■ (신청분야)

-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

전기/전자	전자제품, 전자부품, 산업전자, 전기기기
정보통신	통신/시스템 H/W, 시스템 S/W, 응용 S/W, 정보기술 S/W
기계/소재	수송기계, 자동화기계, 일반기계, 정밀기계, 금속재료, 세라믹재료, 기계요소부품
건설/환경	대기/폐기물, 수질/토양, 건설구조, 건설재료
화학/생명	의약/생명, 정밀화학, 고분자/섬유
원자력/신재생에너지	원자력, 방사선, 신재생에너지

■ 문의처

- 신제품인증 홈페이지 (nepmark.or.kr)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(☎ 02-3460-9185, 9186, 9187, 9188)



■ NET/NEP 인증기준



	NET SPONSOR NEW EXCELLENT TECHNOLOGY	NEP SPONSOR NEW EXCELLENT PRODUCT
신청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년 이내 상용화 가능 기술 * 기존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기술 ※ 제외대상: 접수마감일 이전 상용화된 기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및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 적용 제품 *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/품질 우수 제품
인증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(상용화 가능) * 기술적·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기존기술 대비 혁신적인 기술 * 기존 제품 대비 뛰어나게 우수한 제품 *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
지원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우선구매, 수의계약(NET 적용제품) * 정부 인력지원 사업 우대 등 * 기술금융 지원 및 정부 기술개발 사업 우대 * 신기술 실용화 포상 우대(훈포장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공기관 20% 의무구매 * 정부 기술개발 사업 우대 등 * 수의계약, 우선구매 * 신기술 실용화 포상 우대(훈포장 등)

■ NET/NEP 인증절차



■ 서류작성 및 구비서류

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청서, 설명서(별지양식) * ISO인증서 등 품질경영 설명자료 * 산업재산권 *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 확인서, 요약서 * 공인시험성적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청서, 설명서(별지양식) * ISO인증서 등 품질경영 설명자료 * 산업재산권 *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 확인서, 요약서 * 공인시험성적서 * 신기술성 증명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NET, 특허, 논문, 우수발명, 연구개발결과보고서 * 사용전 검사·검증 증명자료(KC인증 등) * 실용화자료(판매실적) * 사전공개 동의서

인증지원

인증

우수기업연구소 지정

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한 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지정하여 기업 R&D 선도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

신청시기 : 1, 2분기 **지원대상** : 중견·중소기업

전담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■ 지원대상

-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·중견기업
- 3년(접수 마감일 기준)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일 것
 - ※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, 동일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)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
- R&D 역량진단 결과 전체 상위 30%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

■ 지원내용

- (지정 유효기간) 지정 확정일로부터 3년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명의 지정서 발급 및 현판 수여
- 각종 매체 홍보, 이후 정부포상, 국가 R&D사업 가점 부여 등 확대 예정

■ 신청방법

- 온라인 접수
 -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'자가진단'을 실시하고, 통과한 기업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